

目 次

1. 第15回臨時會書面答辯書	300
2. '96第3回冬季아시안게임誘致에關한建議案	303
3. '93第1回追加更正豫算案	310
4. 平昌郡農外所得源開發事業支援을爲한郡稅課稅免除 및不均一課稅에關한條例증改正條例案	320
5. '93公有財産管理計劃第1次變更同意案	323
6. '92~'93郡政主要事業 現地確認 結果	345
7. 陳情書(質疑書) 處理結果 回信 (路洞里一帶 觀光休養地指定 및 靑少年修鍊場汚染 防止對策要求)	365

議員質問書面 答辯書

質問議員	이치욱 의원	所 屬	평창군의회
答 辯 者	평창군수	日 字	질문 (1993. 5. 22) 답변 (1993. 5. 27)

(質問)

'92 군수포괄사업비 지원내역및 추진결과 점검여부

(答辯)

○ 군수포괄사업은 예산규모가 적으므로 군에서 직접발주하지 않고 읍면에
배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분기1회(년4회) 실시하는 군정주요
업무 추진사항 심사분석시 병행하여 사업장 점검을 실시하고 연말 사업비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 군수포괄사업 점검결과 - 총지원 22건 - 272,022천원
미착공 2건 - 17,000천원 반납
사고이월 1건 - 2,899천원

※ 별첨내역 참조

□ '92 군수포괄사업비 점검 현황

(단위:천원)

읍 면	사 업 명	물 량	진도	배정액	집행액	비 고
합 계		22건	%	272,022	251,362	
평창읍	소 계	4건		28,022	27,780	
	◦ 경로당 개보수	1동	100	6,000	5,900	2,899 이월
	◦ 다수, 뇌운리 농로포장	L=300M	100	12,622	9,601	
	◦ 가로등 설치	8등	100	2,500	2,480	
	◦ 현충탑 주변정리	1식	100	6,900	6,900	
미탄면	소 계	4건		35,000	34,821	
	◦ 경로당 개보수	1동	100	2,000	1,970	
	◦ 청사담장 및 판문정비	담장설치외	100	25,000	25,070	
	◦ 회동2리 농로포장	L=200M	100	8,000	7,781	
방림면	소 계	3건		35,000	35,000	
	◦ 경로당 개보수	1동	100	3,000	3,000	
	◦ 간이상수도 보수확장	2개소 580M	100	20,000	17,390	
	◦ 개촌3리 하천정비	L=80M	100	12,000	14,610	
대화면	소 계	2건		34,000	33,557	
	◦ 경로당 개보수	1동	100	4,000	3,957	
	◦ 대화3리 수해위험지구 옹벽설치공사	L=80M	100	30,000	29,600	
봉평면	소 계	3건		40,000	34,935	
	◦ 시가지하수도 공사	L=200M	100	20,000	20,000	
	◦ 시가지가로등 설치공사	20등	100	15,000	14,935	
	◦ 흥정리 교량가설공사	L=40M	0	5,000	0	반납

읍 면	사 업 명	물 량	진도	배정액	집행액	비 고
용평면	소 계	3건		40,000	27,759	
	○ 쓰레기 매립장 설치	누집시설10 평	100	8,000	7,899	반납
	○ 백옥포2리 진입로포장	L=300M	100	20,000	19,860	
	○ 백옥포1리 우회도로개설	L=70M	0	12,000	0	
진부면	소 계	2건		30,000	28,500	
	○ 상진부1리 농로포장	L=450M	100	15,000	14,400	
	○ 송정2리 농로포장	L=450M	100	15,000	14,100	
도암면	소 계	2건		30,000	29,010	
	○ 황계10리 농로포장	L=150M	100	15,000	14,510	
	○ 황계6리 농로포장 및 하수도 공사	L=70M	100	15,000	14,500	

'96제3회 동계아시안게임유치에 관한 建 議 案

의안 번호	119
----------	-----

發議年月日 : 1993. 5.

發議者 : 金 鍾 永 議員

外 6 人

1. 注 文

우리 6만 군민은 신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의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은국민의 동참속에 이 개혁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기필코 신한국이 창조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 합니다.

우리군민은 지난 '88년 인류의 대축제로 치루어졌던 서울올림픽과 산자수려한 이곳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되었던 '91세계잼버리대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큰 보람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96년 개최예정인 제3회동계아시안게임의 유치장소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단체가 용평과 무주 양개지역을 놓고 적지역부 논란을 보이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지역적여건, 기후, 시설, 교통등 여러가지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관련기관 단체의 배전의 선처를 은군민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지역의 개발은 자연자원의 보존측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선별 개발되었으며, 특히 대관령 용평스키장은 20여년간 개발및 보관을 통하여 국내 최대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키장으로 용평이 아닌 다른 장소로 유치한다는 것은 강원도민과 6만 평창군민의 한결같은 바램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나 대한체육회, 대한스키협회, O.C.A등 관계 전문단체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우리고장 용평에 국제 동계게임이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6만 군민의 이름으로 건의 합니다.

"첫째"천혜적인 자연조건과 기후여건은

용평은 2월중 평균기온 영하6도와 적설기간은 5개월이며, 년평균 2,450mm 양질의 건설(乾雪)이 오는데 비해, 무주는 영하1도 적설기간 3개월로 적설량은 800 ~ 1,500mm 이며,

"둘째"시설, 설비면에서는

용평스키장은 시간당 16,775명 수용과 국제규모의 스키장 18면과 F.I.S공인을 획득한 3개면의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말 준공 목표인 10km의 크로스 컨트리 전용경기장과 바이어드론경기장, 96년 개장목표인 면은.무이지구스키장 고성의 알프스스키장등 보조경기장을 활용할 수있어 시설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며, 숙박시설면에서 용평은 단지내 호텔191실,유스호스텔46실,콘도미니엄826실등 총 1,036실과 횡계,진부,강릉동 주변시설까지 포함하여 4,900여실을 보유한 반면, 무주는 주변지역까지 1,146실이며,

"셋째"경기장까지의 접근성은

용평은 서울기점 215km 거리에 위치 3시간10분정도 소요인 반면, 무주는 4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넷째"국내외 대규모 동계대회운영 경험면에서는

용평은 국내 최초로 개장된 스키장으로서 74년부터 '92년까지 연속 18회에 걸친 전국 동계체육대회와 '91년부터 용평배국제알파인스키대회를 유치하고 있어, 국내외 경기운영 경험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다섯째"부수되는 관광자원과 지역소득원개발효과면에서는

고원지대로서 오대산국립공원,동해연안해수욕장,소금강,경포대,오죽헌등 많은 관광자원이 지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4계절 종합관광휴양지로 그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여 동계아시아게임이나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이러한 부존자원개발이 촉진되어 지역개발을 앞당겨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 됩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훌륭한 여건을 겸비하고 있음에도 동계스포츠의 본 고장인 용평 이외의 지역으로 '96동계아시아게임이 유치 된다면 많은 기대를 걸고있는 강원도민과

이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과 소외감을 안겨 줄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수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최소한의 투자만으로도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고려하여,

'96동계아시안게임이 최적의 여건을 갖춘 우리지역 용평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는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평창군의회 전의원은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 提案理由

'95년 북한 삼지연에서 개최될 제3회 동계아시안게임이 '92년 9월 북한이 이를 포기함에 따라 '93.2.17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서 동 대회 개최시기를 1년 연장하고 신청국가인 우리나라의 서울시 및 용평, 무주지역과 중국 하얼빈을 최종확인, 우리나라의 유치가 유력시되면서 용평과 무주 지역간 유치경쟁이 진행되면서 본군 용평지역의 적합한 자연조건(적설량, 적설기간, 평균기온등)과 대회개최에 필요한 국내 최적의 기후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제공인을 취득한 시설과 단지내의 4,900여실의 숙박시설을 활용하고 그간의 수많은 국내의 경기운영 경험을 고려할때 국내 어느 후보지보다 모든면에서 월등히 앞선 조건을 고부갖춘 본군 용평리조트에서 96년제3회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코자하는 6만군민의 뜻을 모아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본 안건을 제출함.

'96 제3회동계아시안게임유치에 관한 건의 의 문

우리 6만 군민은 신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개혁 의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온국민의 동참속에 이 개혁작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기필코 신한국이 창조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군민은 지난 '88년 인류의 대축제로 치루어졌던 서울 올림픽과 산자수려한 이곳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 되었던 '91세계잼버리대회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이를 큰 보람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96년 개최예정인 제3회동계아시안게임의 유치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단체가 용평과 무주 양개지역을 놓고 적지역부 논란을 보이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자연경관 지역적여건,기후, 시설, 교통등 여러가지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사료되는바, 관련기관 단체의 배전의 선처를 온군민이 한마음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지역의 개발은 자연자원의 보존측면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선별 개발되었으며, 특히 대관령 용평스키장은 20여년간 개발및 보완을 통하여 국내 최대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키장으로 용평이 아닌 다른 장소로 유치한다는 것은 강원도민과 6만 평창군민의 한결같은 바램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나 대한체육회, 대한스키협회, O.C.A등 관계 전문 단체에서도 인지하고 있는바와 같이,

우리고장 용평에 국제 동계게임이 유치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면서 6만 군민의 이름으로 건의합니다.

"첫째"천혜적인 자연조건과 기후여건은

용평은 2월중 평균기온 영하 6도와 적설기간은 5개월이며, 년평균 2,450mm 양질의 건설(乾雪)이 오는데 비해 무주는 영하1도 적설기간 3개월로 적설량은 800~1500mm이며,

"둘째"시설,설비면에서는

용평스키장은 시간당 16,775명 수용과 국제 규모의 스키장 18면과 F.I.S공인을 획득한 3개면의 슬로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년말 준공 목표인 10Km의 크로스컨트리 전용경기장과 바이어드론경기장 96년 개장목표인 면은.무이지구스키장,고성의 알프스스키장등 보조 경기장을 활용 할수있어 시설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며,

숙박시설면에서 용평은 단지내 호텔191실 유스호스텔 46실 콘도미니엄 826실등 총1,036실과 황계,진부,강릉등 주변시설까지 포함하여 4,900여실을 보유한 반면, 무주는 주변지역까지 1,146실이며,

"셋째"경기장까지의 접근성은

용평은 서울기점 215Km 거리에 위치 3시간 10분정도 소요인 반면, 무주는 4시간 이상이 소요되며,

"넷째"국내외 대규모 동계대회운영 경험면에서는

용평은 국내 최초로 개장된 스키장으로서 74년부터 '92년까지 연속 18회에 걸친 전국 동계체육대회와 '91년부터 용평배국제알파인스키대회를 유치하고있어 국내외 경기운영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다섯째"부수되는 관광자원과 지역소득원개발효과면에서는

고원지대로서 오대산국립공원, 동해연안해수욕장, 소금강, 경포대, 오죽헌등 많은 관광자원이 지근거리에 위치하고있어,

4계절 종합관광휴양지로 그 개발 잠재력이 풍부하여 동계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이러한 부존자원개발이 촉진되어 지역개발을 앞당겨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 됩니다.

위와 같은 여러가지 훌륭한 여건을 겸비하고 있음에도 동계스포츠의 본 고장인 용평 이외의 지역으로 '96동계아시안게임이 유치 된다면 많은 기대를 걸고있는 강원도민과 이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과 소외감을 안겨 줄 것입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우수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최소한의 투자만으로도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는 이점을 고려하여,

'96동계아시안 게임이 최적의 여건을 갖춘 우리지역 용평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바라는 6만 군민의 뜻을 모아 평창군의회 전의원은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93년도평창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 번호	115
----------	-----

제안년월일 : 1993. 5.

제안자 : 평창군



김한권

1. 제안 사유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수요의 능동적인 지원 및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3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 요구합니다.

2. 제안 주요내용

1993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 의결요구액은 총 2,859백만원으로 일반회계 2,780백만원과 특별회계 79백만원이며

(세 입)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525백만원, 보조금 1,235백만원, 한전부담금 20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313백만원, 보조금 △234백만원입니다.

(세 출)

일반회계의 편성은 법적의무적 경비 275백만원, 경상사업비 140백만원, 주요사업비 537백만원, 기타경비 1,82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요사업비 11백만원과 기타경비 6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 관계 법령

1) 지방재정법 제 36조

지방자치단체는 이미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년도내에 차기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 12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첨부 : '93년도 제 1 회 추가경정예산안 1부 끝.

예 산 총 칙

1993년도 [1회추경]

* 제1조 : 19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회 계 별	세 입 세 출 예 산 총 액	일 시 차 입 한 도 액
총 계	54,601,771	1,638,053
일 반 회 계	43,697,304	1,310,919
특 별 회 계	10,904,467	327,13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공유임야관리사업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사업특별회계	3,064,285	91,928
	839,349	25,180
	369,973	11,099
	10,175	305
	147,400	4,422
	107,443	3,223
	458,139	13,744
	75,550	2,266
	5,832,153	174,964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제6조 생략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433,540천원으로 한다.

예 산 총 규 모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예 산 액	전 년 도 (기 경) 예 산 액	증 ▲ 감
계	54,601,771	51,742,428	2,859,343
일반회계	43,697,304	40,916,845	2,780,459
특별회계	10,904,467	10,825,583	78,884
상수도사업	3,064,285	3,096,367	-32,082
주택사업	839,349	839,349	0
의료보호기금	369,973	446,131	-76,158
새마을소득 금고	10,175	10,175	0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47,400	147,400	0
새마을소득 특별 지원 사업	107,443	95,981	11,462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사업	458,139	156,787	301,352
공유임야 관리 사업	75,550	75,550	0
지방양어금 사업	5,832,153	5,957,843	-125,690

111. 새입세출예산 총괄표

(단위: 천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예산액	구성비율(%)	전년도(기정) 예산액	구성비율(%)	증△감
계	54,601,771	100%	51,742,428	100%	2,859,343	43,697,304	100%	40,916,845	100%	2,780,459	10,904,467	100%	10,825,583	100%	78,884
지방세	4,886,432	9%	4,886,000	9%	432	4,886,000	11%	4,886,000	12%	0	432	0%		0%	432
세외수입	18,281,247	33%	16,452,787	32%	1,828,460	12,284,693	28%	10,739,441	26%	1,545,252	5,896,554	55%	5,713,346	53%	283,208
경상직제외수입	3,911,697	7%	3,911,697	8%	0	2,866,321	7%	2,866,321	7%		1,045,376	10%	1,045,376	10%	0
섬서직제외수입	14,369,550	26%	12,541,090	24%	1,828,460	9,418,372	22%	7,873,120	19%	1,545,252	4,951,178	45%	4,667,970	43%	283,208
경찰교부세	17,561,000	32%	17,561,000	34%	0	17,561,000	40%	17,561,000	43%		0	0%		0%	0
지방방여금	3,944,186	7%	4,069,876	8%	-125,690	0	0%		0%		3,944,186	36%	4,069,876	38%	-125,690
보조금	9,928,906	18%	8,772,765	17%	1,156,141	8,965,611	21%	7,730,404	19%	1,235,207	963,295	9%	1,042,361	10%	-79,066
국보보조금	4,081,650	7%	4,068,203	8%	13,447	3,712,095	8%	3,636,715	9%	75,380	369,555	3%	431,488	4%	-61,933
도보보조금	5,847,256	11%	4,704,562	9%	1,142,694	5,253,516	12%	4,093,689	10%	1,159,827	593,740	5%	610,873	6%	-17,133
계	54,601,771	100%	51,742,428	100%	2,859,343	43,697,304	100%	40,916,845	100%	2,780,459	10,904,467	100%	10,825,583	100%	78,884
기본적경비	15,255,117	28%	15,167,815	29%	87,302	15,067,519	34%	14,991,205	37%	76,314	187,598	2%	176,610	2%	10,988
연건비	8,388,908	15%	8,251,128	16%	137,780	8,383,868	19%	8,241,048	20%	142,820	5,040	0%	10,080	0%	-5,040
관서운영비	3,324,590	6%	3,251,509	6%	73,081	3,216,903	7%	3,143,822	8%	73,081	107,687	1%	107,687	1%	
기본경상비	3,541,619	6%	3,665,178	7%	-123,559	3,466,748	8%	3,606,335	9%	-139,587	74,871	1%	58,843	1%	16,028
사업비	34,496,078	63%	32,109,422	62%	2,386,656	25,170,330	58%	22,546,554	55%	2,623,776	9,325,748	86%	9,562,868	88%	-237,120
경상사업비	2,812,296	5%	3,230,472	6%	-418,176	2,446,444	6%	2,786,310	7%	-3,398,666	365,852	3%	444,162	4%	-78,310
주요사업비	31,683,782	58%	28,878,950	56%	2,804,832	22,723,886	52%	19,760,244	48%	2,963,642	8,959,896	82%	9,118,706	84%	-158,810
기타경비	4,850,576	9%	4,465,191	9%	385,385	3,459,455	8%	3,379,086	8%	80,369	1,391,121	13%	1,086,105	10%	305,016

'93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説明

■ 第1回追更歳入歳出總括

【 一般會計 】

● 歳 入 _____ 2,780百萬元

- 税 外 收 入 _____ 1,525百萬元
 - ┌ 純歳計剩餘金 _____ 1,454百萬元
 - ├ 國庫補助使用殘額 _____ 43 "
 - └ 道費補助使用殘額 _____ 28 "
- 補 助 金 _____ 1,235百萬元
 - ┌ 國 庫 補 助 _____ 75百萬元
 - └ 道 費 補 助 _____ 1,160 "
- 韓電負擔金 _____ 20百萬元

● 歳 出 _____ 2,780百萬元

- 基本的經費 _____ 77百萬元
 - ┌ 人 件 費 _____ 143百萬元
 - ├ 官 署 運 營 費 _____ 74 "
 - └ 基 本 經 常 費 _____ ▲ 140 "
- 事 業 費 _____ 2,663百萬元
 - ┌ 經 常 事 業 費 _____ ▲ 340百萬元
 - └ 主 要 事 業 費 _____ 3,003百萬元

(國費:75 道費:1,160 郡費負擔:1,768)]
- 其他經費 _____ 40百萬元

(國費返還:10 道費返還:30)

■ 第1回追加更正豫算編成事由

【 歳入面에서 】

- '92年度 歳入決算에 따른 純歳計剩餘金 移越
- 道岩面 水下里 發電所周邊地域 支援事業 負擔金
- 國道費 補助金 變更內示
 - ・ 國費補助 _____ 75百萬元
 - 社會福祉費 _____ ▲ 95百萬元
 - 産業經濟費 _____ 170 "
 - ・ 道費補助 _____ 1,160百萬元
 - 一般行政費 _____ 300百萬元
 - 社會福祉費 _____ 222 "
 - 産業經濟費 _____ 289 "
 - 地域開發費 _____ 343 "
 - 民防衛 費 _____ 6 "

【 歳出面에서 】

- 國道費 補助金의 變更에 의한 事業費 調整
- 「新經濟 100日計劃」의 公共部門 豫算節約計劃을 土臺로한 節減財源의 活用 (農機械반값 購入費 支援 等)

■ 豫算規模

(單位:百萬元)

會計別	豫算額	'93當初	1回追更	增減率
計	54,601	51,742	2,859	6
○ 一般會計	43,697	40,917	2,780	7
○ 特別會計	10,904	10,825	79	0.7

【 特別會計 】

(單位:千圓)

會計別	豫算額	當 初	1 回追更	增 減 率
計	10,904,467	10,825,538	78,884	0.7
・ 上水道 事業 特別會計	3,064,285	3,096,367	△ 32,082	△ 1
・ 醫療保護基金特別會計	369,973	446,131	△ 76,158	△ 17
・ 새마을所得 特別 支援 事業特別會計	107,443	95,981	11,462	12
・ 農工地區造成 및 管理 事業特別會計	458,139	156,787	301,352	92
・ 地方 讓與金事業特別 會計	5,832,153	5,957,843	△ 125,690	△ 2

※ 豫算 節減分 活用 內譯

○ 節 減 內 譯

- ・ 人 件 費 : 11百萬圓
- ・ 基本經常費 : 155 "
- ・ 經常事業費 : 583 "
- ・ 主要事業費 : 614 "

○ 投 資 內 譯

- ・ 農機械 購入費支援 : 93百萬圓
 - ・ 郡政 主要 事業 : 558 "
 - ・ 國.道費 補助 事業 : 712 "
- (郡費負擔)

'93 제1회추경예산 주요사업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요 구 액	비 고
계	557,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정홍보 태잎제작 ○ 전산실 설치 ○ 관용차량 세차배출 시설 ○ 간이급수시설(유포, 동매) ○ 간이급수시설 보수 ○ 용산2리 마을회관 신축 ○ 군도정비 (40.5km) ○ 뇌운리 응벽설치 ○ 하천경고판 설치 ○ 방림3리 교량가설 ○ 화의리 진입로포장 ○ 효석공원 조성 ○ 고수부지 스탠드 및 진입로 포장 ○ 대화실내체육관 부지매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 000 25, 000 20, 000 20, 000 35, 000 20, 000 25, 000 25, 000 24, 500 40, 000 20, 000 30, 000 140, 000 113, 000 	

국.도비보조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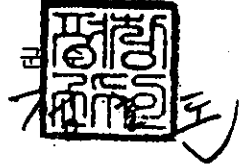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국비	도비	군비	
계	3181,951	173,653	1111,945	1896,353	
○ 위탁영농회사 농기계 공동 수리점 (2개소)	30,000		10,500	19,500	
○ 일반농기계구입지원(307대)					
· 일반기계 (176대)	176,000	88,016	26,395	61,589	
· 판 리 기 (131대)	131,000	85,637	13,609	31,754	
○ UR대응 한우고기 전문판매 장 설치	87,000		50,000	37,000	
○ '92 고냉지채소병충해 피해 지역 토양개량 - 밭격토 (940ha)	282,000		141,000	141,000	
○ '93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					
· 표준화하우스 1ha	40,000		20,000	20,000	
○ '92 고냉지채소 병충해 피해지역 토양개량제 - 석회질	64,978		32,489	32,489	
○ 고냉지채소 망사하우스 (30개소)	45,000		22,500	22,500	
○ 고냉지채소 집적관수 (5개소)	20,000		10,000	10,000	
○ 과채류 비가림재배(1ha)	45,000		22,452	22,548	
○ 달동네 정비사업	300,000		300,000		
○ 재해위험지구정비	59,000		59,000		
○ 원길 덕거제	70,000		70,000		
○ 농어촌 마을길 포장	698,000		209,000	489,000	
○ 봉평소도읍 정비	885,473			885,473	
○ 농촌오수처리시설	248,500		125,000	123,500	

평창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議案 番號	114
----------	-----

제출년월일: 1993. 4.

제 출 자: 평 장 군



1. 提案理由

-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는 세제혜택이 없어 업체유치가 지난한 실정이므로 지방세 감면혜택을 주어 업체유치의 원함을 기하는 동시에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을 유도하고자 함.

2. 主要内容

- 과세감면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지금까지는 농촌 유류 노동인구의 고용증대와 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도 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평창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에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에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중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 까지 적용한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

의안 번호	113
----------	-----

제출년월일 '93.

제출자 명 장



김호도

1. 제안이유

금회에 제출하는 '93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77조및 명장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규정예의한 "안"으로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안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제안 주요 내용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취득재산은 토지가 53필지에 449,993㎡ (136,123명)으로
공설묘지 조성부지 23필지 446,651㎡ (135,112명), 성장작목용수시설부지 22필지 600㎡
(182명), 보건지소 및 진료소부지 8필지 2,742㎡ (829명)로 취득 추정가액은 298,325만원이고
건물은 3동 438.4㎡ (132명)으로 유전출장소 1동 173.4㎡ (52명), 복지회관 피로연장이 2동에
265㎡ (80명)로 방립 165㎡ (50명), 봉명 100㎡ (30명)며 취득 추정가액은 148,000만원임
다음은 교환재산으로서 교환취득은 토지가 3필지에 3,335㎡ (1,009명)로 미탄복지회관 피로
연장 신축부지 1필지에 208㎡ (63명), 봉명중학교부지가 2필지에 3,127㎡ (946명)이며,

교환처분은 토지가 7필지에 4,209㎡(1,273명)로 미탄복지회관 피로연장 설치 부지가 2필지에 208㎡(63명), 봉명중학교 부지가 5필지에 4,001㎡(1,210명)를 민원해결 차원에서 교환정리 코자함.

처분재산은 토지가 245필지에 78,393㎡(23,714명)로 진부승정택지 분양 238필지 75,100㎡(22,718명), 개인건물 점유 소규모 잡증재산 5필지 166㎡(50명)와 봉명중학교 부지 2필지 3,127㎡(946명)는 강원도 교육청에 기부채납코자 하며 추정가액은 8,560,453전원이며 건물이 1동에 81㎡(24명)로 용도메지된 유전출장소가 협소 및 노후로 사용할수 없으므로 절거후 신축코자함.

3. 관계 법령

가.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1항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그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관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지방자치법제35조(지방의회의결사항)

5항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6항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다. 명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법제77 조및 영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총괄표 (7-1)

[일반회계]

단위: m, 전원

구분			합계			당초(상반기)			1차 변경(상반기)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63	469,229	932,651	7	15,901	309,749	56	453,328	622,902
		건물	4	599.98	157,600	1	161.58	9,600	3	438.4	148,000
		기타									
	1) 매입	토지	59	463,963	501,924	6	13,970	203,599	53	449,993	298,325
		건물	1	161.58	9,600	1	161.58	9,600			
		기타									
	2) 교환취득(대채)	토지	4	5,266	430,727	1	1,931	106,150	3	3,335	324,577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3	438.4	148,000				3	438.4	148,000	
기타											
처분	계	토지	273	94,248	8,937,852	21	11,646	240,724	252	82,602	8,697,128
		건물	2	500.94	17,930	1	419.94	11,758	1	81	6,172
		기타									
	4) 매각	토지	259	82,098	8,692,414	14	3,705	131,961	245	78,393	8,560,453
		건물									
		기타									
5) 교환매각(절거)	토지	14	12,150	245,438	7	7,941	108,763	7	4,209	136,675	
	건물	2	500.94	17,930	1	419.94	11,758	1	81	6,172	
	기타										

가. 취득재산

○. 토지	53필지	449,993㎡	(136,123명)
- 공설 묘지 조성부지	23필지	446,651㎡	
- 성장작목 용수시설부지	22필지	600㎡	
- 보건지소 및 진료소부지	8필지	2,742㎡	
○. 건물	3동	438.4㎡	(132명)
- 유전출장소	1동	173.4㎡	
- 방림복지회관 피로연장	1동	165㎡	
- 봉명복지회관피로연장	1동	100㎡	

3. 나. 교환재산

○. 교환취득

- 토지	3필지	3,335㎡	(1,009명)
. 미탄면 장리 607	1필지	208㎡	
. 봉명 장동리 399-1	1필지	1,517㎡	
. " 399-2	1필지	1,610㎡	

○. 교환처분

- 토지	7필지	4,209㎡	(1,273명)
. 미탄면 장리 608	1필지	148㎡	
. 미탄면 장리 609	1필지	60㎡	
. 봉명면 장동리 403-1	1필지	195㎡	
. " 403-2	1필지	1,488㎡	
. " 403-3	1필지	1,220㎡	
. " 403-4	1필지	906㎡	
. " 405	1필지	192㎡	

다. 처분재산

○. 토지	245필지	78,393㎡ (23,714명)
. 진부승정택지분양	238필지	75,100㎡
. 명장하리 56-1	1 필지	7㎡
. " 56-8	1 필지	1㎡
. 대화대화리1001-11	1 필지	116㎡
. " 1001-140	1 필지	10㎡
. " 1001-170	1 필지	32㎡
. 봉명장동리 399-1	1 필지	1,517㎡ (기부채납)
. " 399-2	1 필지	1,610㎡ (기부채납)
○. 건물	1 등	81㎡ (24명)
. 유전출장소사무실절거		81㎡

93년도 취득재산 목록(7-2)

[일반회계]

(단위 : m,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 소 성 명
	지 목	소 재 지	수 량				
계		53필지	449,993	298,325	상반기		
1	임	평장 주진리 산95	26,083	19,000	"	공설 묘지 조 성	방림방림리666 강병선의외10인
2	"	방림 방림리 산692	35,107	25,000	"	"	서울은평구신사 동40-1이덕회외1
3	"	" 산693	2,876	2,000	"	"	"
4	"	" 산694	1,190	1,000	"	"	"
5	"	" 산695	41,851	30,000	"	"	"
6	"	" 산702-8	9,232	7,000	"	"	서울동대문구제 기동892-60 김강수
7	전	평장주진리 56-2	4,631	14,000	"	"	평장 주진리 27 홍영기
8	임야	" 산94	1,785	1,080	"	"	방림 방림리666 강 병 선
9	"	" 산100	288,099	174,300	"	"	경기도 성남시 김 강 수
10	"	" 산98	2,479	1,500	"	"	"
11	"	" 산99	2,182	1,320	"	"	"
12	"	" 산101	1,388	840	"	"	"
13	"	" 산102	4,562	2,760	"	"	"
14	"	" 산97	2,281	1,380	"	"	"
15	전	" 54-1	1,917	1,160	"	"	"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사유	취득재산소유자 주 소 성 명
	지 목	소 재 지	수 량				
16	전	평장 주진리 54-2	3,874	2,344	상반기	공설묘지 조 성	경기도 성남시 김 강 수
17	도로	" 53-2	3,246	1,964	"	"	"
18	전	방림 방림리 114	605	366	"	"	방림면 방림리 조 규 수
19	"	" 114-1	354	214	"	"	"
20	"	" 113-1	356	216	"	"	"
21	"	" 113	1,644	994	"	"	"
22	임야	" 산703	4,364	2,640	"	"	"
23	"	" 산697	6,545	3,960	"	"	"
24	대	용평재산리 1438	25	104	"	성장작목용 수공급시설	용평재산리1419 황 장 수
25	"	" 1451-4	25	82	"	"	" 1560 김 낙 도
26	"	" 1225-19	25	82	"	"	" 869 이 원 호
27	"	" 1000	25	62	"	"	" 997 신 현 두
28	"	" 1307	25	110	"	"	" 1303 김 길 영
29	답	" 985	25	81	"	"	" 1227 김 영 학
30	전	" 1298	25	104	"	"	" 1271 정 면 도
31	답	" 992-1	25	88	"	"	" 1122 권 오 현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사유	취 득재산소유자 주 소 성 명
	지 목	소 재 지	수 량				
32	전	용명재산리 1415	25	136	상반기	성장작목용 수공급부지	용명재산리1560 김 낙 도
33	전	" 1416-6	25	181	상반기	"	용명재산리1560 김 낙 도
34	"	" 1382-3	25	147	"	"	" 1381 박 인 규
35	임	" 153	25	16	"	"	" 1381 박 증 태
36	답	" 1404-12	25	181	"	"	" 1557 전 봉 기
37	"	" 1372	25	98	"	"	대화대화면1001 이 승 열
38	전	" 1567	25	131	"	"	용명재산리1570 백 찬 수
39	"	" 1587	25	136	"	"	"
40	"	" 1520-1	25	88	"	"	" 1520 임 흥 순
41	"	" 1520-16	25	88	"	"	" 1562 배 병 고
42	"	" 1518-11	50	122	"	"	" 1518 조 병 섭
43	대	" 915	25	58	"	"	" 1426 최 장 순
44	"	" 1426	25	134	"	"	"
45	전	" 1457	50	122	"	"	" 557 김 현 조
46	대	방림방림리 1287-3	392	11,900	"	방림보건 지소부지	방림방림리 강 대 길
47	답	평창 다수리 335-4	390	7,850	"	다수보건진 료소 부지	평창 다수리 김 옥 분

일련 번호	재 산 의 크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사유	취 득재산소유자 주 소 성 명
	지 목	소 재 지 수 량				
48	전	명장 마지리 257 344	3,150	"	마지보건진 료소 부지	명장 마지리 정 철
49	전	대화 하안미리 415-4 330	3,000	상반기	가명보건진 료소 부지	대화하안미리 임 정 식
50	"	대화 개수리 742-5 330	3,000	"	개수보건진 료소 부지	대화개수리 문 재 호
51	대	봉명 면온리 799-3 336	3,000	"	면온보건진 료소 부지	봉명면온리 주 교 선
52	전	봉명유포리 75-3 330	3,000	"	등매보건진 료소 부지	대화대화리 마 기 철
53	답	진부거문리 246-7 330	3,000	"	거문보건진 료소 부지	진부거문리 김 광 옥

93년도 취득 재산 목록 (7-2)

[일반회계]

(단위 : m, 전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사유	취 득재산소유자 주 소 성 명
	지 목	소 재 지	수 량				
계			438.4	148,000	상반기		
1	건물	도암 유전리 748-1	173.4	100,000	"	노후협소사 무실교체신축	명 장 군 수
2	"	방림 계촌리 1410-1	165	30,000	"	복지회관미 로연장신축	"
3	"	봉명 장동리 345	100	18,000	"	"	"

93년도 교환 대상 재산 목록 (7-3)

[일반회계]

(단위 : m, 전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교 환 대 상 수 량	추 정 가 액	교 환 시 기	교 환사유	교 환대 상 자
	구 분	지 목	소 재 지	일 단 의 수 량					
계			3필지	5,302	3,335	324,577	상반기		
1	교 환 취 득	답	미 탄 장 리 607	2,175	208	2,496	"	복지회관 미로연장 부지확보 상호교환	미 탄 장 리 전 병
2	"	학 교 용 지	봉 명 장 동 리 399-1	1,517	1,517	156,251	"	85가단150 소유권동시 이행법원결 판	봉 명 장 동 리 권 영 규
3	"	"	" 399-2	1,610	1,610	165,830	"	"	"
계			7필지	6,358	4,209	136,675	"		
4	교 환 처 분	답	미 탄 장 리 608	2,357	148	1,776	"	복지회관 미로연장 부지확보 상호교환	명 장 군 수
5	"	"	미 탄 장 리 609	1,736	60	720	"	"	"
6	"	대	봉 명 장 동 리 403-1	195	195	20,085	"	85가단150 소유권동시 이행법원결 판	"
7	"	답	" 403-2	1,488	1,488	43,937	"	"	"
8	"	전	" 403-3	1,220	1,220	36,844	"	"	"
9	"	"	" 403-4	906	906	27,361	"	"	"
10	"	대	" 405	192	192	5,952	"	"	"

93 년 도 매 각 대 상 제 산 폭 폭 (7 - 4)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 대 수	각 상 량	과표 또는 평가액	매 각 시 기	매 각 사유	매 수 회 망 자 주소 성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일 단 의 수 량							
계		245필지	81, 265	78, 393		8, 560, 453	'93상 반기	택지 분양	분 양 회 망 자	단 독 주 택 지
1	대지	진부면 송정리3- 7	170	175		22, 746	"	"	"	"
2	"	" 3- 8	175	175		23, 638	"	"	"	"
3	"	" 3- 9	175	175		23, 638	"	"	"	"
4	"	" 3-10	175	175		23, 638	"	"	"	"
5	"	" 3-11	170	170		22, 746	"	"	"	"
6	"	" 3-12	175	175		23, 638	"	"	"	"
7	"	" 3-13	175	175		23, 638	"	"	"	"
8	"	" 3-14	175	175		23, 638	"	"	"	"
9	"	" 3-15	175	175		23, 638	"	"	"	"
10	"	" 3-16	175	175		23, 638	"	"	"	"
11	"	" 3-17	182	182		24, 530	"	"	"	"
12	"	" 3-18	182	182		24, 530	"	"	"	"
13	"	" 3-19	182	182		24, 530	"	"	"	"
14	"	" 3-20	196	196		26, 314	"	"	"	"
15	"	" 3-21	196	196		26, 314	"	"	"	"
16	"	" 5- 1	197	197		26, 760	"	"	"	"
17	"	" 5- 2	197	197		26, 760	"	"	"	"
18	"	" 5- 3	197	197		26, 760	"	"	"	"
19	"	" 5- 4	197	197		26, 760	"	"	"	"
20	"	" 5- 5	197	197		26, 760	"	"	"	"
21	"	" 5- 6	197	197		26, 760	"	"	"	"
22	"	" 5- 7	195	195		26, 314	"	"	"	"

(단위 : m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 또 표 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각 사유	매 회 주 소 성 명	수 자 · 양 자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일 단 의 수 량							
23	대지	진부면 송정리5- 8	197	197	26, 760	'93상 반기	택지 분양	분 회 매 회	양 자	단독주택지
24	"	" 5- 9	198	198	26, 760	"	"	"	"	"
25	"	" 5-10	197	197	26, 760	"	"	"	"	"
26	"	" 5-11	197	197	26, 760	"	"	"	"	"
27	"	" 5-12	201	201	27, 206	"	"	"	"	"
28	"	" 6- 1	195	195	26, 314	"	"	"	"	"
30	"	" 6- 2	198	198	26, 760	"	"	"	"	"
31	"	" 6- 3	197	197	26, 760	"	"	"	"	"
32	"	" 6- 4	198	198	26, 760	"	"	"	"	"
33	"	" 6- 5	197	197	26, 760	"	"	"	"	"
34	"	" 6- 6	201	201	27, 206	"	"	"	"	"
35	"	" 6- 7	195	195	26, 314	"	"	"	"	"
36	"	" 6- 8	197	197	26, 760	"	"	"	"	"
37	"	" 6- 9	197	197	26, 760	"	"	"	"	"
38	"	" 6-10	198	198	26, 760	"	"	"	"	"
39	"	" 6-11	198	198	26, 760	"	"	"	"	"
40	"	" 6-12	201	201	27, 206	"	"	"	"	"
41	"	" 9- 1	224	224	30, 328	"	"	"	"	"
42	"	" 9- 2	223	223	30, 328	"	"	"	"	"
43	"	" 9- 3	223	223	30, 328	"	"	"	"	"
44	"	" 9- 4	217	217	29, 436	"	"	"	"	"
45	"	" 9- 5	217	217	29, 436	"	"	"	"	"
46	"	" 9- 6	223	223	30, 328	"	"	"	"	"
47	"	" 9- 7	223	223	30, 328	"	"	"	"	"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 표 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각 사유	매 회 주 소 성 명	수 자 양 자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일 단 의 수 량							
48	대지	전부민 송정리9- 8	223	223	30,328	'93상 반기	택지 분양	분 회 망 자	양 자	단독주택지
49	"	" 7- 1	209	209	28,098	"	"	"	"	"
50	"	" 7- 2	209	209	28,098	"	"	"	"	"
51	"	" 7- 3	209	209	28,098	"	"	"	"	"
52	"	" 7- 4	209	209	28,098	"	"	"	"	"
53	"	" 7- 5	207	207	28,098	"	"	"	"	"
54	"	" 7- 6	205	205	27,652	"	"	"	"	"
55	"	" 13-1	219	219	29,436	"	"	"	"	"
56	"	" 13-2	225	225	30,328	"	"	"	"	"
57	"	" 13-3	228	228	30,774	"	"	"	"	"
58	"	" 13-4	223	223	29,882	"	"	"	"	"
59	"	" 13-5	225	225	30,328	"	"	"	"	"
60	"	" 13-6	225	225	30,328	"	"	"	"	"
61	"	" 15-1	195	195	26,314	"	"	"	"	"
62	"	" 15-2	197	197	26,760	"	"	"	"	"
63	"	" 15-3	198	198	26,760	"	"	"	"	"
64	"	" 15-4	198	198	26,760	"	"	"	"	"
65	"	" 15-5	208	208	17,199	"	"	"	"	협의양도인 택지
66	"	" 15-6	208	208	17,199	"	"	"	"	"
67	"	" 15-7	195	195	26,314	"	"	"	"	단독주택지
68	"	" 15-8	197	197	26,760	"	"	"	"	"
69	"	" 15-9	198	198	26,760	"	"	"	"	"
70	"	" 15- 10	197	197	26,760	"	"	"	"	"
71	"	" 15- 11	219	219	29,436	"	"	"	"	"

(단위 : m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 표 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각 사유	매 회 주 소 성 명	수 자 양 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72	대지	진부면 송 정리 15-12	219	219	29,436	'93상 반기	택지 분양	분 회 망 자	양 자	단독주택지
73	"	" 16-1	208	208	28,098	"	"	"	"	"
74	"	" 16-2	210	210	28,098	"	"	"	"	"
75	"	" 16-3	210	210	28,098	"	"	"	"	"
76	"	" 16-4	221	221	29,436	"	"	"	"	"
77	"	" 16-5	232	232	31,220	"	"	"	"	"
78	"	" 16-6	269	269	36,126	"	"	"	"	"
79	"	" 19-1	212	212	28,544	"	"	"	"	"
80	"	" 19-2	216	216	28,990	"	"	"	"	"
81	"	" 19-3	286	286	38,356	"	"	"	"	"
82	"	" 19-4	408	408	55,304	"	"	"	"	"
83	"	" 19-5	272	272	36,572	"	"	"	"	"
84	"	" 19-6	196	196	26,314	"	"	"	"	"
85	"	" 19-7	272	272	36,572	"	"	"	"	"
86	"	" 19-8	212	212	28,544	"	"	"	"	"
87	"	" 21-7	180	180	24,530	"	"	"	"	"
88	"	" 21-2	195	195	26,314	"	"	"	"	"
89	"	" 21-3	206	206	27,652	"	"	"	"	"
90	"	" 21-4	210	210	28,098	"	"	"	"	"
91	"	" 21-5	169	169	22,746	"	"	"	"	"
92	"	" 21-6	169	169	22,746	"	"	"	"	"
93	"	" 21-7	170	170	22,746	"	"	"	"	"
94	"	" 21-8	197	197	26,760	"	"	"	"	"
95	"	" 21-9	144	144	19,178	"	"	"	"	"

(단위 : m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 또 표 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각 사유	매 회 망 주소 성명	수 자 양 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96	대지	진부면 송 정리 21-10	206	206	27,652	'93상 반기	택지 분양	분 회 망 자	양 자	단독주택지
97	"	" 21- 11	188	188	25,422	"	"	"	"	"
98	"	" 21- 12	199	199	26,760	"	"	"	"	"
99	"	" 21- 13	199	199	26,760	"	"	"	"	"
100	"	" 21- 14	198	198	26,760	"	"	"	"	"
101	"	" 21- 15	148	148	20,070	"	"	"	"	"
102	"	" 22-1	225	225	30,328	"	"	"	"	"
103	"	" 22-2	189	189	25,422	"	"	"	"	"
104	"	" 22-3	189	189	25,422	"	"	"	"	"
105	"	" 22-4	189	189	25,422	"	"	"	"	"
106	"	" 22-5	187	187	24,976	"	"	"	"	"
107	"	" 22-6	225	225	30,328	"	"	"	"	"
108	"	" 22-7	257	257	34,788	"	"	"	"	"
109	"	" 22-8	189	189	25,422	"	"	"	"	"
110	"	" 22-9	189	189	25,422	"	"	"	"	"
111	"	" 22- 10	183	183	24,530	"	"	"	"	"
112	"	" 23-1	223	223	30,328	"	"	"	"	"
113	"	" 23-2	190	190	25,868	"	"	"	"	"
114	"	" 23-3	190	190	25,868	"	"	"	"	"
115	"	" 23-4	190	190	25,868	"	"	"	"	"
116	"	" 23-5	190	190	25,868	"	"	"	"	"
117	"	" 23-6	184	184	24,976	"	"	"	"	"

(단위 : m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 도 표 는 평 가 액	매 각 시 · 기	매각 사유	매 회 망 주 소 성 명	수 자 · 양 자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일 단 의 수 량							
118	대지	진부면 송정리 23-7	218	218	29,436	'93상 반기	택지 분양	분 회 망 자	양 자	단독주택지
119	"	" 23-8	258	258	34,788	"	"	"	"	"
120	"	" 23-9	190	190	25,868	"	"	"	"	"
121	"	" 23- 10	190	190	25,868	"	"	"	"	"
122	"	" 23- 11	190	190	25,868	"	"	"	"	"
123	"	" 23- 12	188	188	25,422	"	"	"	"	"
124	"	" 24-1	186	186	15,288	"	"	"	"	협의양도인 택지
125	"	" 24-2	211	211	17,472	"	"	"	"	"
126	"	" 24-3	196	196	16,107	"	"	"	"	"
127	"	" 24-4	196	196	16,107	"	"	"	"	"
128	"	" 24-5	196	196	16,107	"	"	"	"	"
129	"	" 24-6	196	196	16,107	"	"	"	"	"
130	"	" 24-7	196	196	16,107	"	"	"	"	"
131	"	" 24-8	196	196	16,107	"	"	"	"	"
132	"	" 24-9	194	194	16,107	"	"	"	"	"
133	"	" 24- 10	205	205	16,926	"	"	"	"	"
134	"	" 24- 11	258	258	34,788	"	"	"	"	단독주택지
135	"	" 24- 12	196	196	16,107	"	"	"	"	협의양도인 택지
136	"	" 24- 13	196	196	16,107	"	"	"	"	"
137	"	" 24- 14	196	196	26,314	"	"	"	"	단독주택지

(단위 : m,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 또 표 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각 사유	매 회 주 소 성 명	수 자 양 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일단의 수 량							
138	24-15	진부면 송정리 24-15	196	196	16,107	'93상반기	택지분양	분회양자	협의양도인택	
139	"	" 24-16	196	196	16,107	"	"	"	"	
140	"	" 24-17	196	196	16,107	"	"	"	"	
141	"	" 24-18	194	194	16,107	"	"	"	"	
142	"	" 25-1	255	255	34,342	"	"	"	단독주택지	
143	"	" 25-2	247	247	33,450	"	"	"	"	
144	"	" 25-3	266	266	35,680	"	"	"	"	
145	"	" 25-4	253	253	34,342	"	"	"	"	
146	"	" 25-5	267	267	36,126	"	"	"	"	
147	"	" 25-6	264	264	35,680	"	"	"	"	
148	"	" 25-7	259	259	34,788	"	"	"	"	
149	"	" 25-8	255	255	34,342	"	"	"	"	
150	"	" 25-9	254	254	34,342	"	"	"	"	
151	"	" 25-10	252	252	33,896	"	"	"	"	
152	"	" 26-1	204	204	27,652	"	"	"	"	
153	"	" 26-2	210	210	28,098	"	"	"	"	
154	"	" 26-3	200	200	27,206	"	"	"	"	
155	"	" 26-4	208	208	28,098	"	"	"	"	
156	"	" 26-5	210	210	28,098	"	"	"	"	
157	"	" 26-6	210	210	28,098	"	"	"	"	
158	"	" 26-7	225	225	30,328	"	"	"	"	
159	"	" 28-1	201	201	27,206	"	"	"	"	
160	"	" 28-2	203	203	27,206	"	"	"	"	

(단위 : m,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 또 표 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각 사유	매 회 주 소 성 명	수 자 양 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일 단 의 수 량							
161	대지	진부면 송정리28-3	203	203	27,206	'93상 반기	택지 분양	분 회 망 자	양 자	단독주택지
162	"	" 28-4	203	203	27,206	"	"	"	"	"
163	"	" 28-5	203	203	27,206	"	"	"	"	"
164	"	" 28-6	154	154	20,516	"	"	"	"	"
165	"	" 28-7	197	197	26,760	"	"	"	"	"
166	"	" 28-8	203	203	27,206	"	"	"	"	"
167	"	" 28-9	203	203	27,206	"	"	"	"	"
168	"	" 28- 10	203	203	27,206	"	"	"	"	"
169	"	" 28- 11	203	203	27,206	"	"	"	"	"
170	"	" 28- 12	197	197	26,760	"	"	"	"	"
171	"	" 30-1	194	194	26,314	"	"	"	"	"
172	"	" 30-2	196	196	26,314	"	"	"	"	"
173	"	" 30-3	196	196	26,314	"	"	"	"	"
174	"	" 30-4	196	196	26,314	"	"	"	"	"
175	"	" 30-5	196	196	26,314	"	"	"	"	"
176	"	" 30-6	196	196	26,314	"	"	"	"	"
177	"	" 30-7	194	194	26,314	"	"	"	"	"
178	"	" 30-8	196	196	26,314	"	"	"	"	"
179	"	" 30-9	196	196	26,314	"	"	"	"	"
180	"	" 30- 10	196	196	26,314	"	"	"	"	"
181	"	" 30- 11	196	196	26,314	"	"	"	"	"
182	"	" 30- 12	196	196	26,314	"	"	"	"	"

(단위 : m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 또 표 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각 사유	매 회 주 소 성 명	수 자 양 자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일 단 의 수 량							
183	대 지	진부민 송정리31-1	251	251	33,896	'93상 반기	택지 분양	분 회 양 자		단독주택지
184	"	" 31-2	251	251	33,896	"	"	"		"
185	"	" 31-3	251	251	33,896	"	"	"		"
186	"	" 31-4	251	251	33,896	"	"	"		"
187	"	" 31-5	250	250	33,896	"	"	"		"
188	"	" 31-6	243	243	32,558	"	"	"		"
189	"	" 33-1	187	187	25,422	"	"	"		"
190	"	" 33-2	185	185	24,976	"	"	"		"
191	"	" 33-3	185	185	24,976	"	"	"		"
192	"	" 33-4	184	184	24,976	"	"	"		"
193	"	" 33-5	204	204	27,652	"	"	"		"
194	"	" 33-6	185	185	24,976	"	"	"		"
195	"	" 33-7	185	185	24,976	"	"	"		"
196	"	" 33-8	184	184	24,976	"	"	"		"
197	"	" 34-1	208	208	28,098	"	"	"		"
198	"	" 34-2	199	199	26,760	"	"	"		"
199	"	" 34-3	199	199	26,760	"	"	"		"
200	"	" 34-4	194	194	26,314	"	"	"		"
201	"	" 34-5	233	233	31,666	"	"	"		"
202	"	" 34-6	199	199	26,760	"	"	"		"
203	"	" 34-7	199	199	26,760	"	"	"		"
204	"	" 34-8	194	194	26,314	"	"	"		"
205	"	" 35-1	218	218	29,436	"	"	"		"
206	"	" 35-2	213	213	28,544	"	"	"		"
207	"	" 35-3	184	184	24,976	"	"	"		"

(단위 : m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 또 표 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매각 사유	매 회 망 주 소 성 명	비 고
	지목	소 재 지	일 단 의 수 량						
208	대지	진부면 송정리35-4	163	163	21,854	'93상 반기	택지 분양	분 회 망 자	단독주택지
209	"	" 36-1	253	253	33,896	"	"	"	"
210	"	" 36-2	287	287	38,802	"	"	"	"
211	"	" 38-1	204	204	27,652	"	"	"	"
212	"	" 38-2	204	204	27,652	"	"	"	"
213	"	" 11	380	380	28,520	"	"	"	주차장용지
214	"	" 37	242	242	18,104	"	"	"	"
215	"	" 3- 1	308	308	46,128	"	"	"	근린생활 시설용지
216	"	" 3- 2	308	308	46,128	"	"	"	"
217	"	" 3- 3	308	308	46,128	"	"	"	"
218	"	" 3- 4	308	308	46,128	"	"	"	"
219	"	" 3- 5	308	308	46,128	"	"	"	"
220	"	" 3- 6	308	308	46,128	"	"	"	"
221	"	" 12-1	345	345	51,584	"	"	"	"
222	"	" 12-2	345	345	51,584	"	"	"	"
223	"	" 14-1	414	414	62,000	"	"	"	"
224	"	" 14-2	414	414	62,000	"	"	"	"
225	"	" 17-1	385	385	58,032	"	"	"	"
226	"	" 17-2	385	385	58,032	"	"	"	"
227	"	" 18-1	360	360	54,064	"	"	"	"
228	"	" 18-2	360	360	54,064	"	"	"	"
229	"	" 29-1	390	390	58,528	"	"	"	"
230	"	" 29-2	392	392	59,024	"	"	"	"
231	"	" 29-3	390	390	58,528	"	"	"	"

[일반 회 계]

(단위 : m, 전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표또는 명 가 액	매 각 시 기	매 각 시 기	매 회 수 망 자 주소 성명	비 고
	지 목	소 재 지	일 단 의 수 량						
232	대지	진 부 면 송 정 리 29-4	390	390	58,528	상반기	택 지 분 양	분 양 회 망 자	근린생활 시설용지
233	"	" 29-5	392	392	59,024	"	"	"	"
234	"	" 29-6	390	390	58,528	"	"	"	"
235	"	" 10	676	676	50,592	"	"	"	유지원용지
236	"	" 1	10,208	10,208	611,424	"	"	"	공동주택지
237	"	" 2	6,400	6,400	334,928	"	"	"	임대주택지
238	"	" 4	6,450	6,450	386,298	"	"	"	공동주택지
239	"	평 장 하 리 56-1	47	7	1,764	"	"	평 장 하 리 박 준 회	
240	"	" 56-8	10	1	147	"	"	"	
241	"	대 화 대 화 리 1001-11	116	116	27,608	"	"	대 화 하 안 미 리 심 성 섭	
242	"	"1001-140	10	10	2,380	"	"	"	
243	"	"1001-170	2,855	27	6,426	"	"	대 화 이 태 명	
244	"	"	2,855	5	1,156	"	"	대 화 하 안 미 리 심 성 섭	
245	학 교 용 지	봉 명 장 동 리 399-1	1,517	1,517	156,251	"	"	강 원 도 교 육 정	기 부 재 납
246	"	" 399-2	1,610	1,610	165,830	"	"	"	기 부 재 납
247									

93년도 철거 대상 재산 목록 (7-4)

[일반 회 계]

(단위 : m, 전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매각 대상 수량	과표또는 평 가 액	매 각 시 기	철 거 사 유	매 수 회 망 자 주소 성명
	지 목	소 재 지	일 단 의 수 량					
1	건물	도암면 유전리 748-1	81	81	6,172	상반기	건물 범소 및 노후로사용불 가	명 장 군 수

'92 ~ '93郡政主要事業現地確認結果

平 昌 郡 議 會

현 지 학 인 계 획

- 년초 계획된 군정주요사업을 확인
 - 집행부의 적시성 있는 사업수행을 촉구하고
 - 계상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도모하며
 -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정보취득의 기회를 마련
- 평소 주민의 의문이 있는 사업(시책)은
 -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군정에 반영하고
 - 의문점을 해소하여 민원을 사전 방지코자 함.

■ 기본계획

- 기 간 : '93. 5. 18 ~ 5. 21 (4 일간)
- 대상사업
 - '92 ~ '93 주요 투자사업(시책)
 - 평소 민원의 대상이 되고 주민의 의혹이 있는 사업
- 확 인 자 : 의원 8인 (사무보조 4인)
- 확인반 편성
 - 총괄 : 의장, 부의장

구분 반별	대상지역	확 인 반		사 무 보 조	비 고
		반 장	반 원		
제 1 반	평창, 미탄 방림, 대화	이상훈	이치욱 박용태	사무과장 김창길 행정 7급 함인주	
제 2 반	봉평, 용평 진부, 도암	주태원	김낙운 곽문춘	전문위원 신교선 의사계장 함경호	

☐ '92~'93군정주요사업증확인대상사업목록

읍면별	사업명	비고
평창읍	12건 1. 평창군위생처리장가동 실패 2. 노론~ 지동간 농촌소득원도로 확.포장 3. 임학교 가설상황 4. 평창읍 상수도 이전사업추진상황 5. 배수펌프장건설 6. 용항 마을간 포장사업 7.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패 8. 문화예술회관건설(부지에정지 답사) 9. '92~'93중리제개보수사업 10. 마지양수장보수사업 11. 상리4반 교량가설예정지답사 12. 고등학교진입로포장	
미탄면	9건 1. 회동2리 농촌마을길 포장('92~'93 포팔) 2. 평안1리 농촌마을길 포장 ('92~'93 포팔) 3. 오지종합개발사업 4. 쓰레기 매립장설치 5. '93 광산지역개발사업 6. 농산물집하장 설치('92) 7. 평안1리 성황당 개축 8. 창2리절터 농로포장 9. 백운리 멧재 농로포장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방 립 면	<p>// 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교1리 능촌마을길포장 2. 능산물개량저장고 신축 3. 마을공동 개량저장고 신축 4. 계촌6리 주차장 포장 5. 방림~ 계촌 ~ 둔내간 군도확.포장 6. 계촌4리 교량가설 7. 방림 삼거리 교통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 8. 방림 ~안용간국도 확.포장 ※ 사업장별 문제점 개선대책 추진사항위주(지역주민) 9. 방림면 하수도시설('92) 10. 계촌1리 천재해 예방사업 11. 계촌5리용관 설치('92 포팔) 	
대 화 면	<p>10 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안미 1리 능촌마을길 포장 2. 대화6리 교량가설 3. 대화실내 체육관 부지매입 4. 위탁영농회사건립 5. 대화정주권개발사업 6. 대화5리권 제방공사 7. 하안미3리 비닐자동화시설 현대화사업 8. 신1,4리 농로포장, 교량가설 9. 신3리 농로 확장공사 10. 대화4리 교량가설 ('92) 	

유 표 면	사 업 명	비 고
용 병 면	7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덕거1리 교량가설 2. 창동리 도수로 사업 3. 솔잎혹파리방제사업(343ha) 4. 흥정리 마을안길포장(포팔사업포함)('92~'93) 5. 무이리 본동 마을안길포장(포팔사업포함)('92) 6. 덕거1리 마을안길포장('92) 7. 흥정리교량가설('92) 	
용 병 면	10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속사2리 농촌마을길포장 2. 체육공원 조성 3. 이목정 교량가설마무리 4. 성장작목 시범단지 추진상황 5. 톱밥 생산공장 설치 6. 장평2리 농로포장 7. 대관령 한우고기 기반시설공사 8. 장평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 9. 솔잎혹파리방제사업(고속도로변중) 10. 이승복수련장 보수공사 	

읍 면 별	사 업 명	비 고
진 부 면	3 건	
	1. 거문 ~ 하진부간 군도확·포장 2. 속사 ~ 상진부 군도확·포장 3. 송정지구택지개발사업	
도 암 면	11 건	
	1. 용산1리 농촌마을길 포장 2. 횡계2리 농촌마을길 포장 (2건) 3. 유천출장소 신축 4. 청과물종합 유통시설 5. 마을공동 개탕 저장고 설치 6. 용산 ~ 싸리재간 농촌 군도확·포장('92 ~'93) 7. 횡계 진입로 확·포장 공사 8. 유천1리 마을길 포장 ('92~'93) 유천3리 마을길 포장 ('92) 9. 농촌 오수처리시설 설치 ('92) 10. 횡계 송천정비사업 ('92) 11. 횡계3리 농로포장('92 면장포괄)	

'92 ~ '93 군정주요사업현지확인결과

▣ 확 인 개 요

- 주 관 : 평창군의회
- 기 간 : '93. 5. 18 ~ 5. 22 (5일간)
- 대상사업 : 86건
- 참석인원 : 의원 8명 (사무보조 4명)
- 주요내용
 - '92추진사업과 '93군정주요사업 전반
 - . 사업의 타당성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효과
 - . 지역주민 여론청취 및 의정활동 정보 획득
- 확인반 운영 : 2개반 12명
 - . 총 괄 : 의장, 부의장

반 별	반 편 성		일 정	대상읍면	건 수	비 고
	반 장	반 원				
1 반	이상훈	이지욱 박용태	5. 18 (화)	방림면	11	
			5. 19 (수)	대화면	10	
			5. 20 (목)	미탄면	10	
			5. 21 (금)	평창읍	12	
2 반	주태원	김낙운 곽문춘	5. 18 (화)	용평면	12	
			5. 19 (수)	도암면	12	
			5. 20 (목)	진부면	10	
			5. 21 (금)	봉평면	9	

Ⅲ 총 평

개원 3년차를 맞아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주민의 많은 바램이 군정에 반영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총86건중 55건은 정상 추진 완료되거나 시공중에 있으며, 31건은 구체적 검토가 요구 되었으며, 확인사항과 주민의 여론을 종합하면,

○ 사업장 선정 및 추진면에선

- 당초 계획한 사업이 부지보상등으로 미착공사업이 다수 있었으며,
- 일부사업장 선정과 설계시공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하나 검토미흡으로 주민의 여론대상이 되는 사업장도 있었음.

※ 송정지구택지조성, 이목정 교량가설, 대화6리교량가설

- 토목,건축등은 관계공무원과 주민의 철저한 감시,감독으로 예년에 비해 시공이 월등히 향상되었음.
- 다만 레미콘 타설후 균열이 다수발생되고 있어 그 원인 규명이 요구되고 있음.

○ 예산운영면에선

- 당초 사업선정시 적정 소요예산 판단이 안된 상태로 발주되어 시행과정에서 추가로 예산 소요가 발생하는 사항이 있어 사전 정밀분석이 요구되는 사업이 다수 있었음.

○ 따라서,

- 각종사업 발주시 사전타당성 검토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적정한 예산을 확보, 시행하고,
-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누수현상을 방지하도록 관계부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됨.

▣ 잘 된 점

1. 당초 계획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들의 열의가 돋보였음.
2. 능촌마을길 포장의 지도감독 체제의 정착
 - 사업별 공사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시공지도와
 - 지역주민 명예감독관제 운영으로 정실시공이 진행되고
 - 시공업체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변화되었음.

※ 철저한 마무리, 자재의 규격품 사용등.

▣ 미흡했던 점

1.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 결여
 - 사업성 검토 미흡으로 연속된 부자예산 발생
 - 소관부서의 즉흥적이고 획일적인 예산부자로 재부자 사례 유발로 인한 예산낭비 우려
 - 이목적 교양가설, 송정택지조성 부지 고저 검토, 대화6리 교양가설
2. 집행기관의 인,허가 업체 지도,감독 미흡
 - 인,허가 업체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 미흡으로 주민어른 대두 및 관계부서의 신뢰성 저하
 - 원복수산 송어양식장, 용평레미콘, 태백골재동
3. 계상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 저조
 - 사업량을 감안, 예산을 계상함이 타당하나
 - 임기용변식 예산부자로 추가 소요예산 발생등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불만초래
 - 대화 6리 교양가설, 신 1,4리 능로포장, 평창 배수펌프장

▣ 주요사업장별 착안사항

읍면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평창읍	학생회관 진입로 포장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부족으로 일부 미완공(6m) 부분 향후 포괄사업비등으로 마무리함이 바람직 	
	상리4반 교량가설 (현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수시 13가구 50여명이 고립 예상(농지10ha) ○ 주민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특별 배려가 요구됨. 	

읍 면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비 고
미탄면	광산지역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편입부지 미해결(울치리)로 미착공 되었음 - 길이 74m , 폭 3.5m (90평) ○ 조속히 도로편입부지 지주와 원만한 타결로 조기 착공이 요구됨 	
	창2리 절터농로 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도급공사로 시행, 노면 굴곡이 심하고 지면 시공시 와이어매쉬를 사용하지 않고 타설하여 부실이 우려되므로 향후 철저한 공사감독이 요구됨 	
	송어양식장 여과시설(침전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2년도 원복수산 송어양식장 여과시설(침전지) 설치후 현재까지 방치, 하천수질오염 심각, 대책이 요구됨. 	

읍 면	사 업 명	주 요 내 용	비 고
방림면	농산물개량저장고 신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절차 관계로 착공지연 조기완공토록 · 추진이 요구됨. - 현 능협창고 철거 - 일부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등 	
	계촌6리 주차장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수산부장관 선승인이 필요, 미승인시 주차장 시설이 불가함으로 당초사업 계획을 신중히 검토했음이 바람직 	
방림 -안흥간국도	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도 개설로인하여 운교3리 큰골지역주민의 농산물 출하시 도로 박스형소로 적재차량 통과에 지장초래 예상, 특별대책 강구가 요구됨. - 국도 진입로의 급경사로 농산물 수송차량 진입이 어려움 	
	계촌시가지정비 사업 ('91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촌출장소앞 응벽시설 불량으로 도로가 균열 되었으므로 하자보수등 조치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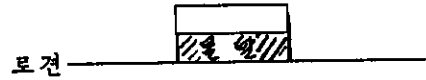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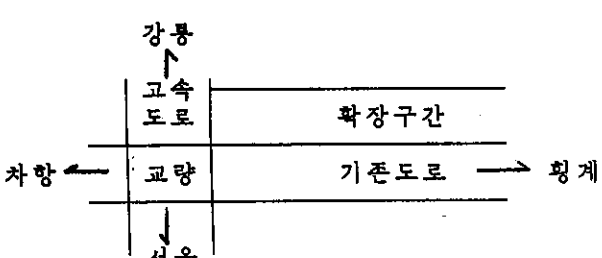
읍면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대화면	대화실내체육관 부지매입	○ 매입비 부족등 행정내부사항 조속조치로 조기 매입 관심 필요	
	대화6리 교량 가설 공사	○ 기초공사시 압반 발굴 없이 시행됨으로 설계변경에 필요한 사업비 책정이 요구됨 (전석층, 확대기초, 말뚝박기등)	
	신 1.4리 농로 포장 공사	○ 기존도로 포장사업비로 소교량 (암거박스)연장 시공중이나 제방과 붙일지, ○ 교량 공사비를 별도 책정하여 교량을 가설함이 바람직	
	신 1리 ~3리간 농어촌도로 확장공사	○ 농축산물 수송및 지역간 균형발전추진과 주민 숙원사업 해결 차원에서 군도로 승격 관리함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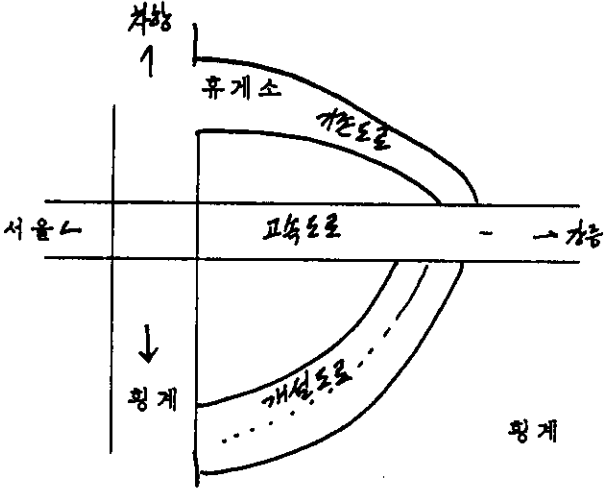
읍면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용평면	장평1리 체육공원 조성및 복지회관 피로연장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공원조성은 향후 지역발전 방향에선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며 복지회관 피로연장 설치도 필수적인 시설이라 판단되나 , ○ 동일지역내 모든시설이 위치하게 되는데 다른 지역개발 차원에서 장평지구의 종합개발 계획수립 시행이 필요함. - 복지회관 부대시설, 체육공원조성, 고속도로인터체인지,향후도시계획도로개설 등을 종합한 장평지구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간활용을 고려 - 종합개발계획 수립후 모든 시설 위치를 정하여 설치함이 바람직 (재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낭비 초래 방지) 	
	장평2리 농토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가장자리 마무리가 미흡하며 노면의 연결부위 합판설치로 차량통행 불편과 노면 조기훼손을 초래, ○ 향후 모든 도로포장시 전체 마무리 및 노면 요철 다수 발생사례 사전방지 대책이 필요 	

읍면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p>성장작목 시범단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R 대비 좋은 사업으로 평가되며 관계 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시공자의 정실시공이 요구되며, ○ 사업시행상 변경을 요하는 부분은 적극검토 조기 완공되도록 관계부서의 각별한 관심 제고가 필요 	
	<p>불발생산공장 시범단지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 확보 및 소득분석으로 지역주민소득에 기여되도록 관련업체의 각별한 관심과 시행이 요구되며, ○ 문제점에 대해선 관계부서와 협의 적극 해결 하고, ○ 술잎혹파리방제구역 폐목을 벌채허가토록 조치하여 불발생산재토로 활용토록 검토함이 바람직. 	

읍면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p>대관령 한우고기 시범판매기반시설 설치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마무리와 (석축, 포장) 도축 부산물 (내장등) 처리장 불결로 주변 악취발생 및 위생해충 (파리, 모기등) 서식 ○ 조속한 시일내 주변시설 마무리와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가 시급 	
	<p>이승복 기념관 청소년 수련장 정비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쓰레기장 설치가 필요하며, ○ 포장 노면 요철, 가장자리 마무리등의 완벽한 시공 감독이 필요. 	
	<p>이북정 교량가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도에 비해 과도한 예산투자로 판단 사업선정이 잘못된 사항으로 사료되며, ○ 교량만 가설되고 마을 진입도로 미개설로 계속 투자예상 - 기존도로 노폭협소 및 고속도로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이 협소, 농산물 수송차량 통행이 지남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가보완이 요구됨.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div>	

읍면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진부면	거문리 군도 확·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공 전반은 잘되었다고 보며 노면에 다수 균열 발생으로 원자재 (레미콘) 규격품 사용여부가 의문임. 	
	송정택지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내 완료되어 분양을 마칠수 있는지 의문이며 분양시 감정가가 무자비보다 낮아질때 적자 우려,이외 대책 사전강구 필요 - 무자비동 감안 분양가 산정이 바람직 ○ 현재 3단으로 조성된 택지최상단층 (5m)을 낮추어 부지에 균형 유지가 필요 - 잔토는 하진부교 하편 고수부지에 체육공원 조성과 함께 성토재로 사용시 2중 효과기대 ※ 성토비 절감, 택지고저 유지 	
	송정택지조성 뒷편 산림훼손 허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지조성에 편승 사유택지 조성으로 간주되며 금후 철저한 산림복구가 요구됨. ○ 허가지역내 발생 마사토를 일부 골재로 사용된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외 철저한 지도,감독과 규명이 필요. 	

읍면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도암면	횡계 송천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92사업중 강변도로 확장부분 경계석 설치가 잘못되었으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 ※도로 노면상부에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업장 건너편 고수부지조성지역 시멘트 포장으로 마무리 필요 	
	농촌오수처리시설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좋은시설을 설치 확대함이 바람직하나 관리인력 미배치 가동상태 점검부실로 오수처리 부실이 우려됨 	
	국제프렌스 산림복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기이전 완료(예정 6.30)미경, 우수로 토사 유출및 산사태가 우려되므로 이의 조기 복구가 요구됨. 	
	횡계진입로 확포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차선확장시 고속도로 진입교량 통과지점 명목현상 발생으로 사고우려 	

읍면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p>○ 현 확.포장보다 고속도로에서 직접 진입 되도록 도로개설이 바람직</p> 	
	<p>용산~사리재 군도확.포장</p>	<p>○ 도로편입부지 미협의 구간 조속히 타결 시행되도록 적극적인 집행기관의 관심제고가 요구됨.</p>	
	<p>유천출장소 신축</p>	<p>○ 준공후 주변조경을 조화있게 조성 면모일신이 필요하며, - 현 나무이식(대형)후 조경수로 교체등</p> <p>○ 슬라브콘크리트 다수 균열로 향후 누수우려가 예상되므로 강도등 성분검사로 사전 하자 예방 조치가 요구됨.</p>	

읍면	사업명	주요내용	비고
	<p>횡계 상수도 배수지 관리실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상태는 양호하며 약제부입등에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됨 ○ 상류 축산폐수로 오염이 잦은데 근본 해결 책이 요구됨. ○ 관내 상수도 취, 배수지의 주변 및 직접 관계 되는 모든 시설이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수시 지도, 점검의 강화가 요구됨. 	

진 정 서 처 리 결 과 회 신

- 관광휴양지 지정 및 오염방지 대책 요구 -

진 정 요 지 서

접 수 일	1993 년 4 월 19일	진 정 번 호	2
주 소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		
성 명	김관수의 42인		
소 관 위 원 회			
건 명	노동리 일대 관광휴양지 지정및 청소년수련장 오염방지대책 요구		

진 정 요 지 (1. 이유및 경과 2. 요구사항)

- 노동리는 농업지역으로 부적당하여 농사만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농외의 소득사업 개발이 절실히 요망됨.
- 고냉지특성을 이용한 배추와 무우재배가 희망적 작목이었으나, 농업기술의 발달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가격보장이 어려워며, 감자 또한 수입농산물에 밀려 인건비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지 못하므로 앞일이 암담한 실정임.
- 노동리 일대가 현재 국토이용계획법상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역조건과 실정에 맞게 관광휴양지로 지정, 농사를 겸한 관광객 수용시설을 설치, 농외소득을 올릴수 있게 하여주기 바람.
-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수용할만한 시설이 없어 일부 민박가구에 수용하는 실정임.
- 1982년도에 이승복유적단지 조성사업 일환으로 이승복 생가터에 조성한 청소년수련장이 기초공사후 사업을 중단 방치되고 있어 여름철이면 피서객의 천막촌으로 화해 편의시설이 없는 피서지로 오염이 심각하므로 책임있는 관리와 활용할수 있는 방안수립이 요구됨.

"새길서 새생활을 실천하자"

평

창

군

우 232-800 / 강원 평창 평창 하리 210-2번지 / 전화 30-2211-4, (행) 211-4 / 전송 33-6356

문서번호 기획 13131-328

시행일자 1993.05.11.(10년)

경유

수신 평창군의회회장

참조 사 무 과 장

제목 진정민원처리.의견통보

1. 평의회 제42호(93. 4. 21)의 관련입니다.
2. 위 호에 의거 붙임과 같이 통보 합니다.

붙임 : 진정민원 처리.의견통보 1부.끝.

평

창

군



陳 情 民 願 處 理 . 意 見

- 우리군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성있는 개발을 위하여 군 전지역에 대한 관광 개발 여건을 '91. 11월부터 '92년 5월까지 전문기술 용역업체인 쌍용엔지니어링(주)에 용역발주하여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자원을 현지조사및 종합분석 검토하고 지역 주민(군민) 공청회를 거쳐 자연자원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이룰수있는 군단위 관광 종합개발계획에 개발대상지구를 20개지구로 구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상위계획인 군 종합개발계획 및 강원도 종합개발계획등에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건의된 노동리 지역은 평창군 관광종합개발 기본계획에 미포함된 지역입니다.
- 노동리의 입지여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요관광 자원으로는 이승복 반공 유적단지들을 들수 있지만 이승복 기념관은 정부에서 반공소년 이 승 복군의 얼을 기리며 반공교육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 승 복 기념관을 건립하고 생가를 복원함은 물론 청소년수련장 시설을갖추어 연간 이곳을찾는 관광객이 54만명에 달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각급학교에서 봄,가을철에 수학여행오는 학생들이며 교통수단또한 대부분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어 이들 관광객들로는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되지않고 있는 실정이며 관광객중 일부는 여름피서철에 텐트를이용 청소년수련장이나 산간계곡등에 야영을 목적으로 이용하여 민박이나 투숙을 원하는 관광객은 극히 적은것으로 각종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 관광객을 유치하자면 볼거리 즉 문화적 자원이 풍부해야 하지만 이곳 노동리지역은 자연경관은 수려하나 볼거리로는 이 승 복 기념관뿐 다른자원이 부족하다고 하는 지적을 관광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듣고 있으며 이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도 유명관광지와 비교하여보면 알수있는 사항입니다.
- 이와같이 자연적, 문화적 관광자원이 부족한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어떤 뚜렷한 주제(테마)를 소재로 개발된 자연농원이나 룯데월드등과 같이 막대한 자본이 수반되어야하는 문제점이 뒤따르며 개발에 소요되는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으로는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투자하는 공영개발방식과 민간(개인이나 기업)의 자본에의한 방법을 들수 있겠으나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첫째 공영개발로 관광지를 개발한다는것은 재정이 빈약한 우리군으로서는 엄두조차 내지못할 형편이며
- 둘째 민간자본에의한 관광지 개발은 자본을 투자하려는 대상(개인,기업)이 있어야 하나 노동리 지역에는 현재까지 자본을 투자하려고 하는 민간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 이같은 관점에서 볼때 현재의 여건으로는 노동리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문제를 논하기는 이르다고 사료되며
현실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노력이 필요할때라 하겠습니다.
- 또한 봉평면 면은지역과 홍천군 내면지역에 대규모 리조트가 개발될것이 예측되는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현재의 농가주택을 민박으로 정비하고 지역 토산식품을 이용한 떡거리 (메밀국수, 감자부침, 도토리묵, 더덕구이, 송어회등)를 개발함은 물론 영농 방법 또한 이곳을 찾거나 지나는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할수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 소득증에 기여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앞으로는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에서도 위락시설의 건축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되는바 무조건 개발 보다는 기존 자연자원을 보존하면서 주민소득증대와 연계 되도록 조화있게 운영하는 지혜 또한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것입니다.

· 진정에따른 내용을 요약하여 답변드리면

1. 노동리 일대가 국토이용계획법상 「경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것을 「관관휴양 지역」으로 변경지정하여 줄것에 대하여
 - 노동리지역은 국토이용계획법상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으로 인근의 산악, 하천 등으로 보아서는 개발의 가치가 없지는 않으나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은 관계행정기관의장(군수:30만㎡이하, 도지사:30만㎡이상)이 최소한의 필요면적을 국토이용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 지역여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후라야 가능하며
 - 노동리지역도 국토건설종합계획에 의한 강원도및 군건설종합계획(기본계획 용역 발주중)에 의거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당장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개발가치가 인정되고 민간인이 개발을 원할시는 강원도및 군건설종합계획에 반영후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 할 계획입니다.

2. 이 승 북 생가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청소년수련장예기초공사를한후 중단상태로 토지와 예산만을 낭비하였다고 하는 사항에 대하여
- 노동리 청소년 수련장은 '83. 11월 도비189백만원을 투자하여 야영장 1개소(1,641평), 심신수련장 1개소(1,509평), 주차장 1개소(1,205평), 화장실 2동(22평)등 청소년 야영활동과 수련활동을 위한 필요시설을 조성하였으며
 - '92년에는 도비100백만원을 투자하여 교량가설(연장:15m, 폭:5.5m), 교량보수(연장:8m), 진입로포장(연장:423m, 폭:4.5m)을 하였고
 - 금년에도 도비53백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조성831㎡, 진입로포장(연장:500m, 폭:4.5m), 교량확장(3.6m, 폭:4.5m)사업을 추진코자 설계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도비를 투자하여 청소년 수련장을 조성할것이므로 이는 진정서에서 지적한 내용처럼 예산을 낭비하고 방치해 두었다고한 사항과는 다르다고 하겠읍니다
3. 여름철이되면 편의시설이없는 피서지로서 피서객들로 인한 오염이 심각하다는데 대하여
- 노동리 지역중 피서객이 많이찾는 운두령지역과 청소년야영장 입구에 틀은박스, 간이화장실, 쓰레기통등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 함으로써 노동리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해 나갈것이며
 - 하절기 피서기간(6 - 9월)중에는 행락질서 합동단속반을 편성(공무원4, 경찰2) 운영, 지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피서객들로인한 자연환경 훼손및 오염을 방지 하고 자연을 보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읍니다